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2024. 6.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4-78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5월 24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5월 28일(화)

2. 제출사유

국민권익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및 사용 기준 완화(안 제5조)
-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안 제6조)
- 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심의위원회 보고사항에 금융기관 예치현황 추가 및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 의무 추가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예탁)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4. 18. ~ 5. 8.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2024. 5. 14.)

원 안	수정의결안
<p>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u>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u></p>	<p>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u>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u></p> <p><u>③ 구청장은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u></p> <p><u>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u></p> <p><u>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u></p> <p><u>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u></p>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5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제도개선 권고¹⁾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안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완화하는 것임.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은 지자체마다 재정여건,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적립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적립이 미흡하므로, 적립요건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적립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마포구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적립기준 완화 대상에 해당됨.

〈표 1〉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 권고(안)

구 분	세입 적립기준	순세계잉여금 적립기준
국민권익 위원회(안)	· 지방세 세입액이 <u>최근 3년 평균금액 초과</u> ⇒ 초과분의 10% 이상 적립	· 순세계잉여금의 <u>10%</u> 이상 적립
	·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적세의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세입액의 합이 <u>전년보다 증가</u> ⇒ 증가액의 10% 이상 적립	·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u>20% 이상 증가</u> ⇒ 증가분의 10% 이상 적립
	·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u>20%</u> 를 초과 ⇒ 초과분의 10% 이상 적립	·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u>150%</u> 를 초과 ⇒ 초과분의 20% 이상 적립
현행 마포구 조례	· 지방세 세입액이 <u>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30%이상 증가</u> ⇒ 초과분의 10% 이상 적립	·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u>200%</u> 를 초과 ⇒ 초과분의 10% 이상 적립

1)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권고에 따른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까지로 명시함.

< 표 2. 마포구 기준별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예상액 현황 >

①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 : 백만원, %, 결산 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지방세 세입	123,830	19.93	151,849	35.19	168,431	30.74	184,952	24.93	164,431	-2.36
최근 3년 평균	(2016~2018)		(2017~2019)		(2018~2020)		(2019~2021)		(2020~2022)	
	103,253		112,319		128,819		148,037		168,410	
30% 이상 증가(기준안)	적립요건 미달		3,953		3,961		적립요건 미달		적립요건 미달	
10% 이상 증가(개정안)	2,057		3,953		3,961		3,691		적립요건 미달	

②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 : 백만원, %, 결산 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순세계잉여금	64,384	32.64	56,335	2.05	57,150	-4.13	61,947	4.48	111,141	193.80
최근 3년 평균	(2016~2018)		(2017~2019)		(2018~2020)		(2019~2021)		(2020~2022)	
	48,541		55,203		59,613		59,290		37,828	
200% 초과(기준안)	적립요건 미달		적립요건 미달		적립요건 미달		적립요건 미달		적립요건 미달	
30% 초과(개정안)	1,584		적립요건 미달		적립요건 미달		적립요건 미달		7,331	

③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 추계(개정안)

(단위 : 백만원, 결산 기준)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적립 예상액	22,577	3,641	3,953	3,961	3,691	7,331
지방세 세입액	13,662	2,057	3,953	3,961	3,691	
순세계 잉여금	8,915	1,584				7,331

- 개정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액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상 적립금액을 추정한 결과, 약 225억 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완화하고 적립액을 재정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원 적립을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5조제3항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70%로 상향하여 수정함.²⁾
- 안 제6조는 통합기금을 공금예금계좌로 설치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을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 마포구는 현재도 여유자금을 구금고의 예금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예치·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통합기금의 보다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에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제1항제5조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의 누락 방지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기금 운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임.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중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

2) 이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은 아니나, 「지방기금법」 제16조제6항에서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는 등 통합기금 관리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또한, 세부적인 예치현황을 위원회 심의 내용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금 운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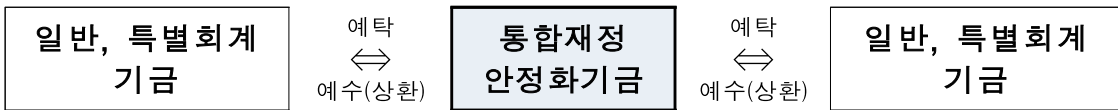
붙임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0.6.9.)

개정내용

-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신설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신설)



-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예산총액의 1%이내) 설정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
- ▶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및 용도

구분	재원	용도
통합 계정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예수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정 안정화 계정	1.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